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(안 제44조제1항)

-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 ‘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’을 추가하도록 함.

나.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(현행 제105제2항제1호바목 삭제)

-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(‘15.8.11)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7조제5항제4호”를 “법 제27조제6항제4호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법 제27조제6항”을 각각 “법 제27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7조제7항”을 “법 제27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

제105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법 제27조제5항”을 “법 제27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법 제27조제6항”을 “법 제27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법 제27조제7항”을 “법 제27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파목 중 “법 제27조제5항”을 “법 제27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하목 중 “법 제27조제6항”을 “법 제27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거목 중 “법 제27조제7항”을 “법 제27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의2(국가하천의 유지·보수 대상시설) <u>법 제27조제5항제4호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	제26조의2(국가하천의 유지·보수 대상시설) <u>법 제27조제6항제4호</u> ----- ----- ----- 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)	제27조(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)
① 하천관리청이 <u>법 제27조제6항</u>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	① ----- <u>법 제27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하천관리청이 <u>법 제27조제6항</u> 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·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·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.	② ----- <u>법 제27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하천관리청이 <u>법 제27조제6</u>	④ ----- <u>법 제27조제7</u>

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·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.

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
제44조(점용료등의 감면)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“공용·공공용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경우

6. (생략)

<신설>

항-----

-----.

⑤ ----- 법 제27조제8항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점용료등의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7.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
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
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
비영리사업

②·③ (생략)

제105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(생략)

2. 안성천·삽교천·만경강·동진강·탐진강·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. 다만, 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,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.

가.·나. (생략)

다.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

라.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·보수

마.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

바. ~ 어. (생략)

3. (생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5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법 제27조제6항 -----

라. 법 제27조제7항-----

마. 법 제27조제8항-----

바. ~ 어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

1. _____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사. ~ 타. (현행과 같음)

파. 법 제27조제6항 -----

가하천의 유지·보수	-----
하. <u>법 제27조제6항</u> 에 따른	하. <u>법 제27조제7항</u> -----
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	-----
· 보수	----
거. <u>법 제27조제7항</u> 에 따른	거. <u>법 제27조제8항</u> -----
하천공사의 준공고시	-----
너. ~ 호. (생략)	너. ~ 호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하천계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713